

IFRS Brief

IFRS Newsletter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8년 8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기준서 등			
사업의 정의	기준서 작성 중	기준서 개정	
공시개선 - 중요성의 정의	기준서 작성 중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토론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주요 모형 발표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견수렴결과 검토
주요재무제표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할인율	분석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7, 8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8년 9 · 10월호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1

I. 요율규제활동

II. 영업권과 손상

Global 동향 4

I. 2018년 7월, 8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FRS 실무적용 해설 5

K-IFRS 1109 '금융상품' - 자본상품 회계처리

I. 요율규제활동

IASB는 '정의된 요율규제(defined rate regulation)'의 활동에 대해 개발된 회계모형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각 규제자산을 인식해야 함

- 특정 시간차이¹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을 더 잘 예측할 것으로 결론 내린 방법에 근거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most likely amount)' 또는 '기대값(expected value)'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함
- 적용한 방법은 시간차이의 발생(origination) 시부터 환입(reversal)될 때까지 일관되게 적용함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할인율

✓ 규제약정이 시간차이의 발생과 환입의 사이에 시간 효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시간차이에 대한 금융요소가 유의적인지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만약, 금융요소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은 요구되지 않음. 그러나, 금융요소가 유의적이라면 기업은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적정 할인율(reasonable rate)'로 할인하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를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금융요소가 명확하다면, 기업은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규제약정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할인하여 규제자산을 측정해야 함. 그러나, 규제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식별 가능한 사건이나 결정으로 인하여 규제요율을 통해 기업이 받는 보상에 초과 또는 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기업은 식별가능한 사건이나 결정이 발생한 기간에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이익이나 손실로 인식해야 함

할인율 변경으로 인한 변경을 포함한 추정 현금흐름의 변경

IASB는 추정 미래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함

✓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변경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전진적으로 인식함

- 변경의 효과가 변경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
- 변경의 효과가 변경된 기간과 미래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과 미래기간에 손익으로 인식

✓ 그러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변경이 규제자산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의 효과는 변경된 기간에 관련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인식함

1 규제요율로 부과되는 시점과 기업이 규제요율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시점의 차이

요율규제자가 시간 차이의 발생과 환입 사이의 기간에 대해 기업에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야 함

- ✓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변경된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할인하여 규제자산 잔액을 측정함
- ✓ 규제자산의 장부금액 변경 금액을 미래 변경 기간 동안에 인식함

규제부채의 측정

규제부채의 측정은 규제자산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모형을 적용함

II. 영업권과 손상

IASB는 영업권과 손상에 관한 다음의 논의를 계속하였고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에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무형자산 간의 회계처리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아니함
- ✓ 회사의 사업결합이 좋은 투자 결정이었는지, 취득 이후에 취득한 사업의 성과가 취득 당시 기대한 수준이었던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 다음의 사항을 제거하여 IAS 36 '자산의 손상'의 사용가치 계산을 개선함
 -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 현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 계산을 세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 ✓ 취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손상 테스트 모델을 변경하기 보다는 현재 IAS 36의 모델을 유지함
- ✓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목적의 일환으로 다음을 고려함
 - 영업권을 최초 인식한 시점에 즉시 영업권을 제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 영업권의 상각을 다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함
 - 매년 요구되는 영업권의 손상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함

IASB는 해당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토론서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IAS 36의 사용가치 계산 개선 등을 위한 공개초안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Global 동향

I. 2018년 7월과 8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2018년 7월과 8월에 IFRIC meeting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8년 7월과 8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원가

해석위원회는 IASB에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원가와 관련하여 IAS 37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좁은 범위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IASB는 다음의 해석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좁은 범위의 기준서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 IAS 37 문단 68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를 구성한다고 명시함
-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원가의 예시를 제공함
- ✓ 손실부담계약과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음
- ✓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정 경과규정 - 수정소급법(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계약에 제안된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함
- ✓ IFRS 최초 채택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제공하지 않음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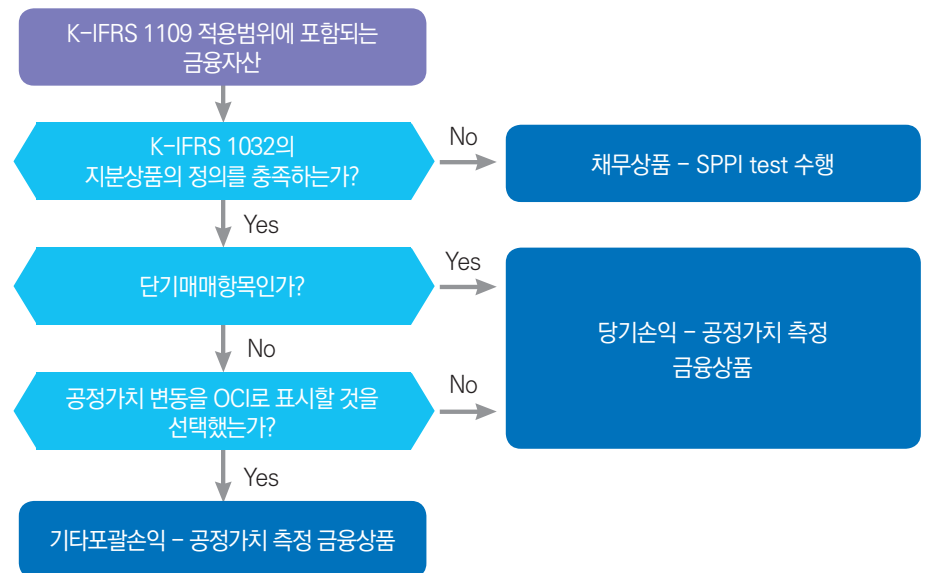
K-IFRS 1109 ‘금융상품’ - 지분상품 회계처리

K-IFRS 1109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FVOCI 선택권)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분상품과 관련한 K-IFRS 1109의 여러가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Overview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Flowchart에 따라 판단한다.



2.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

FVOCI 선택권은 지분상품에만 적용되며, K-IFRS 1109 BC5.21에서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다루는 K-IFRS 1032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K-IFRS 1032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일부 상품도 지분상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상품을 보유하더라도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 풋가능 금융상품 등

K-IFRS 1109 BC5.21에서는 풋가능 금융상품 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하, 풋가능 금융상품 등)은 발행자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풋가능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한 금융상품이 발행자 입장에서 K-IFRS 1032 문단 16A~16D에 따른 '풋가능 금융상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풋가능 금융상품 등은 풋이 행사되거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해야 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상품이다.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K-IFRS 1032 문단 16A~16D를 충족하는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풋가능 금융상품 등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채 예외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품인 것이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 신탁이나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금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Example 1. 풋가능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

[Fact pattern]

X사는 부동산 PFV인 Y사가 발행한 보통주에 투자하였다. Y사의 정관상 존립기간은 7년이며 한 종류의 보통주식만을 발행했다. 또한, Y사 입장에서 해당 보통주는 K-IFRS 1032.16C와 16D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Question]

X사는 Y사의 보통주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Answer]

X사의 입장에서 Y사의 보통주는 청산이 예정된 기업이 발행한 “발행자에게 청산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상품”으로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에도,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Y사의 보통주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X사는 이 상품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2)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파생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K-IFRS 1032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인 정의를 충족하여 자분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예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파생상품은 K-IFRS 1109에서 단기매매항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3)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투자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요소의 가치와 관계없이 부채요소가 실질적으로 유효한(genuine) 경우에는 발행자 입장에서 해당 상품 전체가 지분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품이 의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 상품의 투자자는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품이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면 상품 전체가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상품의 투자자는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KPMG의 견해로는 투자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상품으로 전환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지분상품을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고 회계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FVOCI 선택권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3.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에 해당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만 가능하고, 취소불가능하며, 지분상품 별로 선택할 수 있다.

(1) 외환손익

K-IFRS 1109 문단 B5.7.3에서는 공정가치 후속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한 투자는 화폐성 항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공정가치 변동에는 관련되는 외환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손익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

(2) 배당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OCI에 누적된 손익의 재분류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후속적으로”라는 표현에는 “처분”도 포함되므로 처분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누적손익을 자본 내에서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누적손익과 대체의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4) 거래원가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발생한 거래원가는 궁극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것이다. 즉, 최초 인식 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지분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의 처분 시에 발생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4. 지분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1) 원가로 측정했던 비상장 지분증권과 그에 연계된 파생상품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에 해당하여 K-IFRS 1039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한 금융상품은 K-IFRS 1109의 최초 적용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종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Example 2-1. 원가로 측정했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경과규정

[Fact pattern]

A사의 K-IFRS 1109의 최초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A사는 K-IFRS 1039하에서 지분상품에 대해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하였다.

지분상품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은 450이고, 2018년 1월 1일의 공정가치는 630이다.

[Analysis]

A사는 지분상품의 2017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과 2018년 1월 1일의 공정가치의 차이인 180을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 혹은 자본 내 다른 항목에 인식하여야 한다.

Example 2-2. 원가로 측정했던 비상장 지분증권에 인식된 손상차손

[Fact pattern]

Example 2-1을 변형하여, A사가 지분상품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하였고, K-IFRS 1039하에서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은 100이다.

이때, 해당 손상차손누계액을 OCI로 재분류해야 할까?

[Analysis]

K-IFRS 1109의 경과규정은 원가로 측정한 비상장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와 원가로 인식된 장부금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에 인식된 손상차손누계액을 OCI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5. FVOCI 선택 지분상품 ← → 관계기업투자,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또는 종속기업투자는 K-IFRS 1109를 적용받는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K-IFRS 1109의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FVOCI 선택권을 적용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이 더 이상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도록 한 K-IFRS 1109의 원칙은 K-IFRS 1109를 적용받던 지분상품이 관계기업투자(또는 종속기업투자)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더 이상 관계기업투자(또는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1) 연결재무제표

i) 단계적 취득 : FVOCI 지분상품 → 종속기업투자

피투자기업의 지분상품을 추가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해당하므로 K-IFRS 1103 '사업결합'을 적용한다. K-IFRS 1103은 단계적 취득에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접근법을 적용한다.

K-IFRS 1109 적용으로, 이러한 접근법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기존 지분을 처분하고 재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지분 처분의 회계처리가 달라졌을 뿐이다. 즉, K-IFRS 1109 적용 이전에는 지분 처분시 누적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였다면, K-IFRS 1109 적용 이후에는 누적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결합시 단계적 취득에도 기존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게 되었다.²

2 K-IFRS 1109의 원칙을 반영하여, K-IFRS 1103이 개정되었다.

단계적 취득 : FVOCI 지분상품 → 종속기업	
K-IFRS 1109 적용 이전	K-IFRS 1109 적용
- 누적평가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누적평가손익 재분류 금지 ³

Example 3. 단계적 취득 - 사업결합

[Fact pattern]

A사는 B사의 지분 10%를 400에 취득하고 K-IFRS 1109하에서 해당 지분을 FVOCI로 분류해왔다. 당기 중에 B사의 지분 50%를 5,000에 추가로 취득한 결과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해당일 현재 기존 10% 지분의 공정가치는 1,000이다.

지배력 획득 시점의 B사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20,000과 10,000이다.

[Question]

B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점 회계처리

[Answer]

차변		대변	
B사의 식별가능한 자산	20,000	B사의 식별가능한 부채	10,000
		현금	5,000
		B사주식	1,000
		비지배지분	4,000

기준에 인식된 B사 주식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ii) 단계적 취득 : FVOCI지분상품 → 관계기업투자

금융상품기준서 적용대상 지분상품이 관계기업투자주식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본래 IFRS상 명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사업결합시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기존 지분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아래 표, 재측정법)과, 기존 보유 지분도 관계기업 주식의 원가(아래 표, 원가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선택가능한 회계정책으로 인정되어 왔다. K-IFRS 1109에서는 처분시에도 누적평가손익이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두 방법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3 누적기타포괄손익을 재분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회계정책이 인정된다. (사업결합 외에 다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함)

- ✓ OCI에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 ✓ OCI에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을 계속 OCI로 분류함

단계적 취득 : FVOCI 지분상품 → 관계기업투자	
K-IFRS 1109 적용 이전	K-IFRS 1109 적용
<p><u>회계정책 선택</u></p> <p>1. 재측정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보유지분은 재측정하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p>2. 원가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보유지분의 장부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 이전 보유지분의 누적평가손익은 이익 잉여금으로 재분류함 	<p>OCI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음</p>

iii) 일부 처분 : 관계기업투자 → FVOCI 지분상품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 가치는 K-IFRS 1109하의 최초 인식시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그리고, 잔여 보유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K-IFRS 1109에 따라 회계처리 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해당 지분상품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의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K-IFRS 10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 처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과 관계기업주식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회계처리와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상기 K-IFRS 1028의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회계처리의 원칙은 K-IFRS 1109 시행 전부터 존재하던 원칙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그러나, 두번째 원칙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 상실 회계 처리 시 관계기업이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회계처리를 할 때, 관계기업이 K-IFRS 1109에 따른 FVOCI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K-IFRS 1109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mple 4. 일부 처분 : 관계기업투자 → FVOCI 지분상품

[Fact pattern]

2018년 1월 1일에 A사는 B사의 지분 30%를 300에 취득하였다. 2018년에 B사는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보고하였고 B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없다.

B사 보고 이익		A사 지분법 반영 금액	
당기순이익	30	지분법이익	9
채무상품공정가치평가이익 (OCI)	20	지분법자본변동	6
지분상품공정가치평가이익 (OCI)	10	지분법자본변동	3

2018년 12월 31일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은 318(=300+9+6+3)이다.

2019년 1월 1일에 A사는 B사의 지분 20%를 공정가치인 300에 처분하였고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처분시점에 B사의 잔여지분의 공정가치는 150이고 A사는 B사의 잔여지분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하였다.

[Question]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시점의 회계처리는?

[Answer]

차변		대변	
현금	300	지분법주식	318
FVOCI 지분상품	150	지분법주식처분이익	138
지분법자본변동	6		

관계기업주식 처분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회계처리와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존에 인식된 관계기업 B사 주식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채무상품 공정 가치 평가이익과 관련된 금액 6은 손익으로 재분류되지만, B사가 보유한 지분상품공정 가치평가이익과 관련된 지분법자본변동금액 3은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2) 별도재무제표

i) 단계적 취득 : FVOCI 지분상품 → 종속기업투자/관계기업투자 (원가법)

별도재무제표 상에서는 종속기업투자 또는 관계기업투자는 원가법, 지분법,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이라는 세 가지의 옵션 중 하나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FVOCI 지분상품에 대해 지배력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원가를 측정할 지가 문제가 된다. IFRS에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달리 기존 지분을 처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실무관행이 있었다.

- ✓ 유의적 영향력 획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간주하거나,
- ✓ 실제 과거 시점의 취득원가를 원가로 본다.

첫번째 방법을 따르는 경우, K-IFRS 1109 적용 전에는 지분상품이 종속기업투자(또는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되었어도 관련된 누적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다가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였다. K-IFRS 1109 적용 후에는 처분시점에도 누적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두번째 방법을 따를 경우, 지분상품이 종속기업투자(또는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되는 시점에, 실제 취득원가로 회귀하게 되는데, 주식을 장부금액을 조정하면서 누적평가손익도 함께 제거된다.

최근 해석위원회에 이 회계처리가 질의로 접수되었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석위원회 Staff은 별도재무제표상 원가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상기 두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두번째 방법에서 주식의 장부금액을 원가로 조정할 때, 누적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향후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실무관행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Example 5. 단계적 취득 : FVOCI 지분상품 → 종속기업투자/관계기업투자 (원가법)

[Fact pattern]

2018년 1월 30일에 A사는 B사의 지분 10%를 200에 취득하고 FVOCI 선택권을 적용하였다. B사는 2018년 12월 31일에 상장하였다. 2019년 1월 1일에 A사는 B사의 지분 20%를 600에 추가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2019년 1월 1일에 A사는 B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차변		대변	
지분상품	100	지분상품평가이익(OCI)	100

[Question]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점 회계처리하는?

[Answer]

(1) 기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지분법주식의 원가로 간주하는 방법(첫번째 방법)

차변		대변	
지분법주식	900	현금	600
		지분상품	300

이 방법에서 회사가 지분상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누적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정책을 선택한 경우, OCI에 있는 누적평가손익 100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2) 기존 지분상품의 원가를 지분법주식의 원가로 간주하는 방법(두번째 방법)

차변		대변	
지분법주식	800	현금	600
지분상품평가이익(OCI)*	100	지분상품	300

* 진행중인 IFRIC 논의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함

ii) 일부 처분 :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원가법) → FVOCI지분상품

별도재무제표상에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던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의 일부를 처분하여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지배력 상실(또는 유의적 영향력 상실) 시점의 공정가치로 최초 장부금액을 측정하여야 하나, 재측정 전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의 회계처리하는 IFRS상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지분법주식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된 사례에 대하여 과거 질의회신을 통해서 견해가 정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잔여 보유 지분을 처분 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해석위원회에서 이 이슈도 함께 논의 중인데, 해석위원회 Staff은 FVOCI 선택과 무관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이다. 기존 관행과 차이가 있는 견해이므로 향후 해석위원회의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mple 6. 별도재무제표에서의 단계적 처분

[Fact pattern]

A사의 B사의 지분 24%를 400에 취득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B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A사의 지분이 18%로 변경되어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A사는 B사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점에 B사 지분 18%에 대한 공정가치는 350이다.

[Question]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시점에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Answer]

- ✓ K-IFRS 1039하에서는 B사의 잔여 지분이 매도가능지분상품으로 분류되었다면, 과거 연석회의 논의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400과 공정가치 350의 차이는 OCI로 인식하여 왔다.

차변		대변	
매도가능증권	350	관계기업주식	400
기타포괄손익	50		

- ✓ 동 이슈는 해석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해석위원회 Staff의 견해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지분상품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은 지분상품의 신규취득에 해당하므로 관계 기업투자주식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K-IFRS 1109하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에 대해 FVOCI 선택권을 적용하는 지와 무관하게 관계기업투자 주식의 처분에 대한 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A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400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350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변		대변	
FVOCI 지분상품	350	관계기업주식	400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50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상무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이승훈 S.Manager

T. (02)2112-7874

E. seunghoonlee@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

kpmg.com/kr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